

2. 주요내용

가. 지게차 조종 자격 부칙 기한 연장 등(안 부칙 제2조, 제3조)

1) 지게차 조종 작업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 이수 등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임

2) 지게차 조종 자격제도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유경험자에 대한 자격인정 특례를 마련함

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의 특례기한 연장(안 부칙 제216호 제3조)

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 취득자는 별표6 제8호에 따른 보수교육을 부칙 제216조 제3조 기한 내 이수하여야 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임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 취득자의 보수교육 이수기한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rtwea@korea.kr

- 팩스 :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34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조치를 위한 사업주 의무 및 화재위험 감시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화재 위험물질 취급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동시에 화기사용 작업을 금지하는 한편, 밀폐 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자격이 있는 자를 확대하고 측정방식에 원격측정을 포함함으로써 폭발 또는 화재 사고예방을 보다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시 사업주 의무 구체화(안 제232조)

- 1) 현행 사업주의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 예방 조치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체화할 필요
- 2)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조치에 환기장치의 예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함

나. 화재감시자 감시업무 구체화(안 제241조의2)

- 1) 사업주가 용접·용단을 하는 장소에 배치하는 화재감시자에 대한 감시업무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
- 2) 화재위험 감시업무 내용을 화재 위험물질 확인 및 화재 예방시설 작동 여부 확인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화재 예방 기능을 강화함

다. 화재 위험물질 취급작업을 하는 장소에서의 동시 화기사용 작업 금지(안 제242조)

- 1) 화재 또는 폭발 위험 장소에서 화기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화재 위험물질 취급작업과 동시에 화기사용 작업을 실시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음
- 2) 인화성 물질 등 화재 위험물질 취급작업과 화기사용 작업을 동시에 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

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자격 요건 확대 및 측정 방법에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측정 포함(안 제619조의2)

- 1)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자격이 한정되어 있어 소규모 사업장 등은 산소농도 측정이 어려움
- 2)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자격 범위에 안전보건공단의 교육을 이수한 자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추가하여 사업장에서 원활히 산소농도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 3) 산소농도 측정 방법에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원격 측정이 포함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rtwea@korea.kr

- 팩스 : 044) 202-80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4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을 명확히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일몰규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고, '21.1.17. 기준으로 재지정함으로써 취약지역 검진대상자의 불편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 단서조항 수정·보완(안 별표30)

1) 제97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중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에 관한 규정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의사 1명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근로자수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 집행 혼란을 방지하도록 함

*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 1만명당 →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 근로자 ... 1만명마다

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일몰규정 연장 및 재지정(안 부칙 제30256호 제3조 제1항, 제3항 신설)

1)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취약지역 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대상자의 장거리 이동불편을 경감하여 주는 규정(제97조제2항)의 유효기간('21.1.17)이 도래함에도

2) 해당 지역의 경우 신규 특검기관 설립 또는 출장검진 활성화를 즉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바, 취약지역 야간작업 특수검진 대상자의 원거리 검진으로 인한 부담 경감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

3) 이에, 제97조제2항 일몰규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고, 유효기간 만료일자('21.1.17.) 기준으로 지정해제 및 재지정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artwea@korea.kr

- 팩스 : 044) 202-8090